

환경교육사 자격증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교육 이수기관	기관명			이수기간 . . . ~ . . .		
신청 사유	[]발급	자격등급	환경 교육사 급				
		자격요건					
	[]재발급	최초 발급받은 자격증 번호	환경 교육사 급 제 호				
		재발급 사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인
인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수수료
	재발급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없음
		2. 환경교육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자격 확인 → 자격증 작성 → 자격증 발급 (발급대장 기재)

신청인 국가환경교육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환경교육센터